

# 조정 규칙



klrc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지역 해결  
글로벌 솔루션

## KLRCA 표준조정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이 조정에 의해 해당 분쟁의 원만한 화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이 발생한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2015

Reprint 2015

*If there is any inconsistency or ambiguit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

# 목차

조정규칙

---

제1부

KLRCA 조정규칙

제2부

부표

제3부

조정법 2012

제4부

KLRCA 조정규칙에

대한 안내



**제1부****KLRCA 조정규칙**

규칙 1 - 2	규칙의 적용	5
규칙 3 - 6	조정절차의 개시	
규칙 7 - 11	조정위원 선정	6
규칙 12 - 15	조정위원의 역할	8
규칙 16	당사자들의 역할	9
규칙 17 - 18	권한 및 대리	
규칙 19 - 21	기밀유지	10
규칙 22 - 24	조정절차	11
규칙 25 - 28	조정종결	
규칙 29 - 31	비용	12
규칙 32	행정 지원	14
규칙 33 - 34	면책	
규칙 35 - 36	기타 절차에 있어 조정위원의 역할	
규칙 37 - 44	요금표	15

**제2부  
부표****요금표**

	i) 국내조정	18
	ii) 국제조정	19
부표 A	기밀유지 협약 및 보장서	20
부표 B	표준조정조항	23

<b>제3부</b> 조정법 2012	25
<b>제4부</b> KLRCA 조정규칙에 대한 안내	42

---

제1부

KLRC  
조정규칙

---



## 규칙의 적용

1.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KLRCA 조정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의 적용에 동의한 경우 모든 현재나 미래 분쟁의 모든 조정에 적용된다.
2. 본 규칙에 당사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법률의 조항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조정절차의 개시

3. 본 규칙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조정신청서를 KLRCA에 제출하여야 한다:-
  - a) 당사자들 및 모든 관련 법적 또는 기타 대리인들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포함), 전화번호;
  - b) 모든 조정조항에 대한 언급 또는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조정 합의서 사본;
  - c) 해당 분쟁 발생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는 계약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법적 관계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한 언급;
  - d) 분쟁의 본질,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청구금액, 모든 당사자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특정 보전조치나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 e) 본 규칙에 첨부된 요금표에 따라 산정된 신청비용 (“신청비용”이라 한다).
4. 규칙 3에 따른 서면 조정신청서의 수령 후 KLRCA는 명시된 다른 상대방/상대방들에게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5. 다른 상대방/상대방들의 신청서 수락에 대한 서면 통지를 KLRCA가 수령한 날짜가 조정 과정이 개시된 날짜로 간주된다.
  6. 다른 당사자/당사자들이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규칙 4에 따라 KLRCA의 신청서에 대한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LRCA가 답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KLRCA는 이를 신청서에 대한 거부로 간주하여 그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당사자/당사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 조정위원의 선정

7. 조정위원 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인물을 조정위원으로 공동 임명한다.
8. 규칙 4에 따른 조정신청서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 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KLRCA 센터장이 조정위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의 선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9.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조정위원은 1인이 된다.
10. 해당 조정위원의 독립성 또는 언제나 공정하게 행동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모든 재정 또는 개인적 이해 또는 모든 이해의 상충이 있는 모든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았고 이후 조정위원 선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인물은 조정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
11. 선정 후 편향, 편파 또는 중립성 부족에 대해 합리적 인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대해 조정위원이 알게 된다면, 해당 조정위원은 즉시 당사자들에게 해당 사정을 고지하고, 해당 조정위원이 KLRCA에 의해 선정된 경우, 즉시 KLRCA에 고지한다. 어떤 당사자라도 해당 조정위원의 직무 지속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조정위원은 부적격이 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조정위원의 부적격일로부터 추가 30일 이내에 새로운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한 30일 기간 내에 조정위원 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된 대체 조정위원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KLRCA 센터장이 조정위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의 선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조정위원의 역할

12. 조정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13. 조정위원은 분쟁의 정황, 당사자들의 소망, 분쟁의 만족스럽고 즉각적인 해결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실제적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조정위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14. 조정 이전 또는 과정 중, 조정위원은 당사자들과 함께 또는 각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의 출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고, 해당 조정위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대면, 전화, 화상회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신할 수 있다.
15.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에게 공식 조정의 개시 이전에 예비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예비회의의 목적은 조정위원의 지원으로, 당사자들에게 다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a) 분쟁의 쟁점에 대해 논의 및 합의하거나 그러한 쟁점을 해명하고 그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공식화한다;
  - b) 조정위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에 의한 입장표기문서를 비롯하여 해당 조정에 관련된 문서의 발부 및 교환에 대한 조항을 마련한다;

- c) 해당 조정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기타 계획 및 행정적 준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한다.

## 당사자들의 역할

- 16. 조정의 각 당사자들은 성실하게 조정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각 당사자 및 그 대리인들은 입장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 및 조정위원과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권한 및 대리

- 17. 조정의 각 당사자들은 선택하는 모든 개인에 의한 지원 또는 대리를 받을 수 있다 (법률고문 포함). 그러한 모든 개인들의 신원, 연락처 및 역할은 모든 당사자 및 조정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8. 조정의 각 당사자는 분쟁 해결의 권한을 지니거나 분쟁 해결의 전적인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개인들에 의해 대리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그러한 권한이라도 제한되는 경우, 권한 제한에 대한 사실을 당사자들 및 조정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기밀유지

19. 모든 조정절차는 비공개 및 기밀로 유지된다. 조정의 모든 당사자 및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건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부표 A에서 제공되는 기밀유지 보장서에 서면 보장을 작성한다.
20. 회의나 개인 면담에서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해당 조정위원 간에 기밀로 유지된다. 단,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해당 조정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해당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조정의 조정위원, 모든 당사자 및 참여자들은 해당 조정과 관련하여, 또는 해당 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비공개 및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법률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b) 조정 합의서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또는 분쟁의 전체 또는 어떠한 일부의 화해나 해결을 위해 도달된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c) 조정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조정절차

22.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조정절차는 KLRCA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23. 당사자들에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는 조정절차의 시간 및 장소에 대해 통지한다.
24. 당사자들은 조정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든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한다.

## 조정의 종결

25. 조정위원회는 다음을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정황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조정을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정위원 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 a) 당사자들이 불법/사기 행위에 관련되어 있거나;
  - b) 당사자들이 협상에 유효하고 합당하게 참여할 수 없거나;
  - c) 조정 과정의 지속이 어떠한 당사자나 제3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26.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중지 또는 종결이나 사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는 기밀유지 의무의 위반 없이, 또한 당사자들에게 최소로 가능한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27. 조정위원회는 KLRCA 센터장에게 즉시 종결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한다.
28. 규칙 25에 따라 발생하는 종결 이외에, 조정은 다음의 경우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 a) 당사자들이 서면 화해 합의서에 서명한 후;
  - b) 당사자들과의 상의 후, 이후 조정을 시도할 정당한 근거가 더 이상 없다는 취지의 조정위원회의 서면 결정서;
  - c) 당사자 중 일방이 이로써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서면 결정서를 조정위원 앞으로 보내는 경우; 또는
  - d)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규칙 4에 따라 조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기간 만료; 또는
  - e) 규칙 30에 따라 적절하게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이 이러한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바대로 지불되지 않은 경우 KLRCA 센터장의 명령에 따라.

## 비용

29. 다른 합의가 없거나 법원 또는 중재인의 명령이 아닌 경우에, 각 당사자는 조정의 자부담 비용을 부담한다.

30. 조정 비용 및 경비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조정위원의 전문 보수;
- b) 회의실, 휴식실 등의 장소 대여 비용, 식사, 번역비, 복사비, 인터넷 접속, 전화 및 통신비, 규칙 30(d)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비용, 조직 또는 조정 행위라는 점에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발생하는 모든 기타 비용;
- c)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참석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 또는 전문가 증인과 관련하여 위에 명시된 모든 보수 또는 비용;
- d) 본 규칙에 따라 고정된, 조정 수행과 관련된 KLRCA의 적절한 행정비용. 전기 사항을 제한하지 않고, KLRCA의 비용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i) 신청비용;
  - ii) 선정비용 및
  - iii) 모든 행정비용.

31. 당사자들은 상기 규칙 30에 명시된 비용 및 경비에 대해 공동 및 개별 책임이 있다.

## 행정 지원

32. 상기 규칙 24에 따라, KLRCA 센터장은 조정위원이나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번역가, 행정 지원 및/또는 기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 면책

33. KLRCA쪽이나 본 규칙에 따라 면책 또는 소송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하는 개인의 사기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KLRCA 또는 조정위원은 본 규칙에 따라, 또는 본 규칙 하에 수행된 모든 조정에서 도달한 모든 화해와 관련하여 또는 화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해당 조정의 어떤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참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4. 조정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은 명예훼손, 중상, 비방의 어떤 소송 또는 어떤 관련 청구도 구성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기타 절차에 있어 조정위원의 역할

35.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중재인의 역할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 또는 변호인 역할을 하거나 모든 중재 또는 소송 절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36. 당사자들 및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을 그러한 모든 절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후 모든 절차 또는 중재에 있어 조정위원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소환하거나 강제하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 요금표

37. 당사자들은 조정위원 보수에 대해 조정위원과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요금표가 적용된다.

38. 요금표는 국제 및 국내조정을 위한 요율을 제공한다.

a) “국제조정” 은 다음 경우의 조정을 의미한다 –

- i) 조정의 당사자 중 일방이 말레이시아 이외의 다른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 ii) 상업적 또는 기타 관계 의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거나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가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다; 또는
- iii) 당사자들이 조정의 대상이 하나 이상의 국가와 관련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b) “국내조정” 은 “국제조정” 이 아닌 모든 조정이다.

39. 조정의 개시 이전에, 각 당사자는 본 규칙에 첨부된 요금표에 따라 신청비용, 선정비 (해당하는 경우) 를 지불하고 조정위원 보수 및 행정비용을 KLRCA에 예납한다.
40. 조정 과정 중 어느 때든 KLRCA 센터장은 규칙 30에 언급된 비용 및 경비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추가 예납금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규칙 30에 언급된 비용 및 경비로 인해 KLRCA 센터장이 요청하는 모든 해당 추가 금액의 합은 추가 예납금 요청의 수령 후 15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41. 규칙 29 및 30에서 언급된 금액 중 어떤 것이라도 요청서의 수령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KLRCA 센터장은 당사자 일방 혹은 타방이 요청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42. 그러한 모든 예납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은 KLRCA 센터장과 협의한 후, 조정의 중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다.
43. KLRCA 센터장은 조정을 위해 KLRCA 및 조정위원에게 발생한 보수 및 지출로 당해 예납금을 쓸 수 있다.
44. 조정의 종결 후, KLRCA 센터장은 수령 및 사용한 예납금을 결산하여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예납금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부  
부표

---



## 요금표

### 국내조정

#### a) 신청비용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RM150.00은 조정을 개시하는 당사자가 지불하여야 한다(규칙 3(e)).

#### b) 행정비용

조정인 행정비용은 사건당 RM500.00으로 고정된다.

#### c) 조정위원 보수

- i) 일일 RM3500.00; 및
- ii) 문서 검토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시간당 RM450.00.

## 국제조정

### a) 신청비용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USD50.00는 조정을 개시하는 당사자가 지불하여야 한다(규칙 3(e)).

### b) 행정비용

조정의 행정비용은 사건당 USD250.00로 고정된다.

### c) 조정위원 보수

i) 일일 USD6000.00; 및

ii) 문서 검토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시간당 USD750.00.

## 부표 A

## 기밀유지 협약 및 보장서

## 당사자들:

..... 및

..... 및

..... ( “조정위원” )

서명인들은 월 일자로 조정합의에 들어갔으며 그에 따라 조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1. 서명인들은 그 서명에 의해 하기 조항 2 및 3의 조건에 대한 합의를 근거로 조정절차에 참석할 의사를 포함합니다.
2. 각 서명인은 당사자들 및 조정위원에 대해 다음을 보장합니다:
  - a) 예비 단계를 포함하여 조정 중 공개된 모든 정보(“기밀 정보”)를 서명인 본인들과 고용 조건 또는 모든 보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밀로 유지할 것;

- b) 법률에 의해 강제되거나 해당 기밀 정보를 공개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절(a)의 보장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을 것;
  - c) 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각 서명인은 당사자들 및 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면책 특권이 부여되며 다음 사항은 조정에 대한 당사자간 모든 중재 또는 소송 절차에 있어 공개되거나 요구되거나 증거 제공 또는 문서 제출을 위한 모든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 a) 당사자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모든 화해 제안;
  - b) 모든 해당 제안을 고려하려는 당사자의 의사;
  - c) 당사자에 의한 모든 인정 또는 승복;
  - d) 조정위원회에 의한 모든 진술 또는 문서.
4. 당사자들은 다음의 하나 이상의 경우에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 중이나 조정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a) 해당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b) 합의 또는 협의에 도달했다는 사실 및 합의 또는 협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 c) 모든 개인에 대한 상해 또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손실의 예방이나 최소화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 부표 B

### 표준조정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이 조정에 의해 해당 분쟁의 원만한 화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이 발생한다.”

---

제3부  
조정법  
2012

---



# 말레이시아법

## 법률 제749호

### 조정법 2012

#### 목차

#### 제1부 예비 조항

1. 약식 표제 및 개시
2. 적용 예외
3. 해석
4. 조정은 법정 행위, 중재 등을 금하지 않는다

#### 제2부 조정외 개시

5. 조정외 개시
6. 조정 합의

#### 제3부 조정위원

7. 조정위원의 선정
8. 조정위원 선정의 종결

## 제4부

### 조정 과정

9. 조정위원의 역할
10. 조정위원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11. 조정의 수행

## 제5부

### 조정의 종결 조항

12. 조정의 종결
13. 화해 합의
14. 화해 합의의 효력

## 제6부

### 기밀유지 및 비밀권

15. 기밀유지
16. 비밀권

## 제7부

### 기타

17. 비용
18. 부표 수정 권한
19. 조정위원의 법적 책임
20. 규정

## 부표

## 말레이시아법 법률 제749호

### 조정법 2012

조정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조정을 촉진 및 장려하고, 그에 의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대비하도록 촉진하는 법률.

아래와 같이 말레이시아 의회에 의해 **제정됨**:

#### 제1부 예비

##### 1. 약식 표제 및 개시

- 1) 이 법은 조정법 2012로 인용할 수 있다.
- 2) 이 법은 관보의 공시로 장관이 정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 2. 적용 예외

이 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부표에 명시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쟁;

- b) 법정에서 제기된 모든 민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사, 치안판사 또는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조정;
- c) 법률구조부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조정.

### 3. 해석

이 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비당사자**” 는 당사자 또는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하며, 각 당사자의 변호인, 분쟁의 대상에 대한 전문가 또는 증인을 포함한다;

“**기관**” 은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조정 교신**” 은 다음 사항과 같이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의미한다—

- a) 조정절차 중;
- b) 조정과 관련하여; 또는
- c) 조정의 고려, 수행, 참여, 개시, 지속, 재소집 또는 종결이나 조정위원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장관**” 은 법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장관을 의미한다;

“조정위원”은 제7조에 따라 당사자가 선정한 조정위원을 의미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정위원이 당사자들 간 교신 및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자발적 과정을 의미한다;

“조정 합의”는 제6조에 명시되는 합의를 의미한다;

“화해 합의”는 제13조에서 명시되는 합의를 의미한다;

“당사자”는 조정 합의에 대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를 포함한다;

“절차”는 모든 민사 절차를 의미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 신청을 포함한다.

#### 4. 조정은 법정 행위, 중재 등을 금하지 않는다

- 1) 제2조에 따라, 모든 개인은 법정의 모든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 2) 이 법률에 따른 조정은 법정의 모든 민사소송 또는 중재의 개시를 금하지 않으며, 어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절차의 유지 또는 연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 제2부

### 조정외 개시

#### 5. 조정외 개시

- 1) 개인은 분쟁이 발생한 타방에게 조정에 대한 서면 초청서를 보냄으로써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언급된 초청서에는 분쟁 중인 문제를 간략하게 명시한다.
- 3)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는 개인이 보낸 서면 초청서를 수령한 후, 분쟁이 발생한 타방은 서면으로 해당 서면 초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개인이 분쟁이 발생한 타방으로부터 서면 초청서에 대한 수락서를 수령하면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 5) 제(1)항에 따른 조정에 관한 초청서는 조정을 개시한 개인이 분쟁이 발생한 타방으로부터 해당 개인이 서면 초청서를 보낸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해당 서면 초청서에 명시된 기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 6. 조정 합의

- 1) 제5(4)항에 명시된 조정의 개시 후, 당사자들은 조정 합의를 시작한다.
- 2) 조정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서명한다.
- 3) 조정 합의에는 당사자들 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조정 분쟁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합의, 조정위원의 선정,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당사자들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타 문제들이 포함된다.

## 제3부 조정위원

### 7. 조정위원의 선정

- 1) 당사자들은 조정에 있어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조정위원을 선정한다.
- 2) 이 제3부에 따라 선정된 조정위원은—
  - a) 훈련 또는 공식 고등 교육을 통해 조정에 대한 관련 자격, 특별 지식 또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거나;
  - b) 조정위원과 관련된 기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들의 선정을 지원하도록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조정 합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해 1인의 조정위원이 존재한다.
- 5) 2인 이상의 조정위원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들은 조정에 있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 6) 조정위원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정위원의 선정은 유효하지 않다.
- 7) 이 제3부에 따라 선정된 조정위원은,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조정 결과에 대한 재정 또는 개인적 이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개인이 해당 조정위원의 조정위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모든 알려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8) 조정위원에게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보수가 지급되거나 기타 모든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 8. 조정위원 선정의 종결

- 1) 이 제3부에 따라 선정된 조정위원이—
  - a) 제7(2)(a)목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관련 자격,

특별 지식 또는 경험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 b) 제7(2)(b)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조정위원과 관련된 기관의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 c) 해당 분쟁에 재정 또는 개인적 이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 d) 사기에 의해 조정위원 선정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또는
  - e) 조정의 조정위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위원의 선정을 종결하고 조정을 위해 또 다른 조정위원을 선정하거나 기관이 또 다른 조정위원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어떤 사유로든 조정위원의 선정을 종결할 수 있으며 해당 조정위원에게 종결에 대한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 **제4부 조정 과정**

### **9. 조정위원의 역할**

- 1) 조정위원은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이 수행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분쟁 화해에 대해 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다.
- 3)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조정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한다.

## 10. 조정위원회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 1)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에게 분쟁의 간략한 사실을 명시하는 진술서와 해당 당사자가 제출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보충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조정의 모든 단계에서,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1. 조정의 수행

- 1)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개인적으로 수행됨과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또는 각 당사자와 각기 회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장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 a) 조정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선택하는 비당사자가 해당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 b)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라, 조정위원이 선택하는 비당사자가 조정 과정 중 조정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3) 조정위원은 조정위원 자신의 견해로, 추가적인 조정 노력이 당사자들 간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 제5부

### 조정의 종결

#### 12. 조정의 종결

조정은 다음 사항의 경우 종결된다—

- a) 제13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화해 합의서에 서명한 후;
- b) 추가적인 조정 노력이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를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에게 발부한 후;
- c) 조정이 종결됨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를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에게 발부한 후; 또는
- d) 제6조에 명시된 조정 합의에 의해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 i) 조정이 종결됨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를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 및 조정위원회에게 발부한 후;
- ii) 일방 당사자에 의한 조정 철회 후; 또는
- iii) 일방 당사자의 사망 또는 일방 당사자의 무능력으로 인해.

### 13. 화해 합의

- 1) 조정의 종결 및 분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도달 후, 당사자들은 화해 합의를 시작한다.
- 2) 제(1)항에 따른 화해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서명한다.
- 3) 조정위원회는 화해 합의서에 배서하고 해당 합의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 14. 화해 합의의 효력

- 1) 화해 합의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
- 2) 법원에서 절차가 개시된 경우, 화해 합의는 화해 판결 또는 법정의 판결로서 법정에 기록될 수 있다.

## 제6부 기밀유지 및 비밀권

### 15. 기밀유지

- 1) 어떤 개인도 모든 조정 교신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 교신은 다음 사항의 경우 공개될 수 있다—
  - a) 해당 공개가 당사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 b) 해당 공개가 조정 교신을 제공하는 개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 c) 해당 공개가 이 법률에 따라 또는 모든 성문법에 따른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절차의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또는
  - d) 해당 공개가 화해 합의의 실시 또는 시행의 목적으로 모든 기타 성문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 16. 비밀권

- 1) 모든 조정 교신은 비밀권을 가지며 공개되거나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 교신은 다음 사항의 경우 비밀권을 가지지 않는다—
- a) 당사자들, 조정위원 및 비당사자에 의해 비밀권이 명시적으로 보류된 경우;
  - b) 해당 교신이 증거법(Evidence Act) 1950[법률 제56호]에 의한 공개 문서인 경우;
  - c) 해당 교신이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협이 되는 경우;
  - d) 해당 교신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범죄 또는 범죄 행위 또는 진행 중인 범죄 또는 진행 중인 범죄 행위를 감추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될 의도인 경우;
  - e) 조정위원에 대해 제기된 전문적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청구 또는 고소를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해 해당 교신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 f) 조정 기간 중 행위를 근거로 당사자, 비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에 대해 제기된 전문적 위법 행위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한 청구 또는 고소를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해 해당 교신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제7부 기타

### 17. 비용

- 1) 조정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 18. 부표 수정 권한

장관은, 관보에 공개된 명령에 의해, 부표를 수정할 수 있다.

### 19. 조정위원의 법적 책임

조정위원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이루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성인 것으로 입증되거나 고의의 부정행위가 아닌 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 규정

장관은 본 법률의 대상 및 목적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부표

[제2(a)목]

### 적용 예외

1. 연방헌법의 모든 조항의 효력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절차.
2. 각급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법률 (Courts of Judicature Act) 1964[법률 제91호]의 부표에 명시된 대로, 대권영장과 관련된 소송.
3. 임시 또는 영구 명령의 구제 방법과 관련된 절차.
4. 선거위반법 (Election Offences Act) 1954[법률 제 5호]에 따른 선거소청.
5.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1960[법률 제 486호]에 따른 절차.
6. 연방헌법 제128조에 따라 연방법원의 제1심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절차.
7. 위헌 법률 심사.
8. 상소.
9. 개정.
10. 원주민 법원 (native court) 의 모든 절차.
11. 모든 형사 문제.

---

제4부

KLRCА  
조정규칙에  
대한 안내

---



## 1. KLRCA 조정규칙이란 무엇입니까?

KLRCA 조정규칙은 당사자들의 국내 또는 국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정 과정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적 규칙입니다.

## 2. KLRCA 조정규칙 표준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KLRCA 조정규칙에 호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KLRCA 표준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표준조항은 본 규칙의 부표 B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3. 합의서에 표준조정조항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된 결과 도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분쟁이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도 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어떤 종류의 분쟁이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분쟁의 대다수는 건설, 상품, 보험, 임대주 및 임차인, 유통 계약 또는 공동 연구개발 (R&D) 계약이나 기타 모든 종류의 상업분쟁으로부터 발생합니다.

## 5. KLRCA 조정규칙을 사용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KLRCA 조정규칙은 기밀유지 보호의 필요성에 민감한 조항을 포함하는 탄력적인 규칙입니다. KLRCA는 가용 시설의 마련에 의해, 조정위원 선정을 통해, 합리적인 고정 요금표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절차에 적용되는 보수와 비용에 대한 균형잡힌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조정위원과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6. KLRCA 조정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는 본 조정규칙의 규칙 3에 따라 요구되는 바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신청을 KLRCA에 제출하고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USD50.00 (국제조정인 경우) 또는 RM150.00 (국내조정인 경우) 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습니다.

## 7. KLRCA 조정규칙에 따르면 언제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까?

KLRCA의 지원에 따른 조정은 다른 상대방/상대방들의 신청서 수락에 대한 서면 통지를 KLRCA가 수령한 날짜가 조정 과정이 개시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 8.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비용은 얼마입니까?

조정위원과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KLRCA 요금표를 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비용은 조정을 개시하는 당사자가 지불하는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국제조정인 경우 USD50.00, 국내조정인 경우 RM150.00) 을 포함합니다.

조정위원 보수는 조정에 요구되는 날짜 수에 대한 금액과 함께 문서 검토 및 관련 작업에 대한 시간당 요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KLRCA 행정비용은 USD250.00 (국제조정인 경우) 및 RM500.00 (국내조정인 경우)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9.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위원 선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 4에 따른 조정신청서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 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KLRCA 센터장이 조정위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의 선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0. 선정된 조정위원이 본 규칙에 따라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당사자라도 해당 조정위원의 직무 수행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조정위원은 부적격이 됩니다.

## 11. 당사자들이 요청된 보수, 비용 및 경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보수, 비용 및 경비의 지불은 규칙 4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KLRCA 센터장은 당사자 일방 혹은 타방이 요청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한 모든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은 KLRCA 센터장과 협의한 후, 조정의 중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12. 조정절차에서 사실상 기밀이 유지됩니까?

예.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은 규칙 19-21에서 규정되는 바대로 사실상 비공개이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조정위원, 당사자들, 참여자들 및 KLRCA는 조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단, 법률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시행 및 집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조정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3. KLRCA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할 때 당사자들이 KLRCA 조정위원단으로부터 조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들은 선택한 조정인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14. 전체 조정절차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규칙 28(d)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규칙 4에 따른 조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역 해결  
글로벌 솔루션

# 조정규칙

##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의  
후원하에 설립됨)

Bangunan Sulaiman  
Jalan Sultan Hishamuddin  
50000 Kuala Lumpur  
Malaysia

T +603 2271 1000

F +603 2271 1010

E [enquiry@klrca.org](mailto:enquiry@klrca.org)

[www.klrca.org](http://www.klrca.org)